



법무부



수신 강성준 귀하
(경유)

제목 정보공개결정통지서(접수번호 7687610, 행정심판 사건번호 21-10146)

정보 ([√]공개 [√]부분 공개 [√]비공개) 결정 통지서

접수번호 : 7687610, 행정심판 사건번호 21-10146

접수일 : 2021. 4. 8.
행정심판 재결일 : 2022. 2. 8.

청구내용

2020년 이후 현재까지 귀 기관이 산하 교정시설에 하달한 코로나9 방역 지침(개정되어 현재 효력이 없는 과거 지침 포함) 관련,
1) 공문 제목, 문서번호, 시행일, 소관부서, 내용공개여부(공개, 일부 공개, 비공개로 구분)
2) 위 공문의 사본

공개내용

안녕하십니까!
법무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
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【결정내역】

○ [공개]

1. 공문 제목, 문서번호, 시행일, 소관부서
2.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한 외부의료시설 진료지침 (의료과-4997, 2020.4.8.)
3.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격리해제 기준(의료과-159, 2021.1.4.)
4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교정시설용 대응 지침(의료과-1043, 2021. 1. 9.)

○ [부분공개]

1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계획 (주의단계) (의료과-809, 2020.1.21.)
2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계획 (경계단계)

(의료과-990, 2020.1.28.)

3.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 발령에 따른 대응지침 (심각단계)

(의료과-2177, 2020.2.24.)

4. 코로나19 관련 교정민원콜센터 감염관리지침

(의료과-3639, 2020.3.16.)

5.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절 시행에 따른 코로나19교정시설 방역 세부 지침 (의료과-5604, 2020.4.20.)

6.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교정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(의료과-6345, 2020.5.6.)

7. 코로나19 교정시설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처우 조정표 (의료과-12909, 2020.8.28.)

8. 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수용자 처우 조정표 개편 (의료과-16531, 2020.11.6.)

9. 전국 교정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방역관리 강화방안 (의료과-19424, 2020.12.30.)

10.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자 처우조정표 개선 (의료과-4710, 2021.2.15.)

→ 위 1~10항의 교정시설 방역지침 중 수용자 이송·출정·귀휴, 신입수용자 처우, 종교행사, 가족접견, 조사·징벌, 가석방 심층면접, 교도작업 등 세부사항에 관련된 정보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」 제9조제1항제4호 및 6호 중 형의 집행, 교정에 관한 사항 및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[비공개]

1.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(의료과-18261, 2020.11.30.)

2. 교정기관 코로나19 격리치료시설 운영 지침 (의료과-18262, 2020.11.30.)

3. 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내 직원 방역 강화 방안 (교정기획과-22816, 2020.12.17.)

4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교정시설 대응 매뉴얼 (의료과-1896, 2021.1.16.)

5.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 (의료과-2246, 2021.1.19.)

→ 위 1~5항의 교정시설 방역지침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

를」 제9조제1항제4호 '형의 집행, 교정에 관한 사항' 등 수용자 처우 및 교정시설 세부 운영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'에 해당하여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청구정보에 대한 결정내용에 더 문의하실 내용은 법무부 의료과 (☎ 02-2110-3616)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.

공개 일시	공개 장소							
*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								
공개 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열람·시청	<input type="checkbox"/> 사본·출력물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전자파일	<input type="checkbox"/> 복제·인화물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
수령 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 방문	<input type="checkbox"/> 우편	<input type="checkbox"/> 팩스 전송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정보통신망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
납부 금액	① 수수료	원	② 우송료	원	③ 수수료 감면액	0원	계(①+②-③)	원
	납부일 :	수수료 산정 명세 :		수수료 납입계좌(입금 시) 301-0147-0570-31 (농협은행, 법무부)				
*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,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.								

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2022년 5월 19일

유의 사항

-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 - 가.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 - 나.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- 다.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입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-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.
 - 가.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
 - 나. 수입인지(정부기관) 또는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
-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**납부일**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.
-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-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**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 : www.simpan.go.kr) 또는 행정소송**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,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법 무 부 장 관

교감 **김이훈** 교정관 전결 2022. 5. 19.
협조자 **임종오**

시행 의료과-28299 접수

우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(중앙동) / <http://www.moj.go.kr>

전화번호 02-2110-3616 팩스번호 02-2110-0364 / kim0325@moj.go.kr / 비공개(4,6)

청렴은 맺고! 부패는 끊고!